

8-1. 칙령 41호 이전의 독도 인식과 이용

시마네현 등에서 독도는 1893년 이전에 '리랑코도'로 알려져 있었지만⁸⁶⁾ 이 인식은 일본에서 국부적이며, 시마네현 바로 옆의 어업 선진 현인 야마구치현이나 오이타현에서는 어업자조차 독도를 거의 인식하지 않았다. 앞에 쓴 바와 같이 울릉도를 기지로 하는 오이타현의 상어 잡이 어선은 1899년 4월에 독도를 '발견'하여 그 보고 기사가 『지학잡지』에 게재됐을 정도였다. 이 '발견' 소문은 울릉도 어민에게 곧 퍼졌을 것이다. 다음 달에는 야마구치현의 잠수기 어업자가 울릉도에서 독도로 가서 전복을 땄다. 그런 어업을 통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널리 알려지고, 그 소식이 일본 정부에 공식으로 보고되었다. 예를 들면 앞에 쓴 바, 부산의 일본 영사관 보고서(1902)에는 울릉도의 "정 동쪽 약 50해리"에 리양코도가 있다든지, 이 섬에는 물이 없다는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대한제국 칙령 41호(1900) 이전에 독도에서 어업 활동을 한 자는 일본인 어민들이며 한국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일본인 어민들에 의한 독도의 활용이 독도 영유권 문제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민을 포함한 울릉도의 일본인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상세히 알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울릉도에 거류한 일본인들의 거주 경위와 실태, 한국인 거주자들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1883년의 일본인 강제 쇄환 후에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다시 거주하게 된 것은 1891(메이지24)년 끈끈이를 만드는 일본인들 7명이 잠입한 것이 시작이라 한다.⁸⁷⁾ 부산 영사관의 다른 보고서는 1년 늦은 "메이지 25년에 이르러 오키국으로부터 목재 제조자가 수명 도항해 처음으로 오두막을 짓고 영주하게 되었다."고 기록하였다.⁸⁸⁾ 이 보고서에서 주목 되는 것은 영사관이 1892년에 거주한 일본인들을 이미 영주자로 보았다는 사실이다. 그 후 일본인들은 서서히 증가하여 청일전쟁 후에는

86) 주 35와 같음.

87) 앞의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제14권, 各領事機密來信, 釜山領事館機密 제17호 (明治33年6월12일), p.545 ; 外務省記錄 3532 「蔚陵島調查概況」, 明治33년.

88) 外務省記錄 616-10, 「明治三十五年蔚陵島狀況」, 『釜山領事館報告二』.

200명 안팎이나 됐다. 일본인들의 목적은 주로 목재 제조였으나, 울릉도에는 경찰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 벌채가 횡행하고 한일간의 외교 문제로 되기 시작했다.

이 당시의 울릉도 도감은 배계주였다. 그는 1895년 8월 도감으로 임명되어 1896년 봄부터 울릉도에 취임하였다. 그는 울릉도에서 일본인과 공생하는 길을 찾았다. 영사관 보고에 의하면 그는 “시마네현 평민 기무라 겐이치로(木村源一郎), 돛토리현 평민 이시바시 유자부로(石橋勇三郎)와 공모하여, 일본인 재류민에게 비개항장에서 밀수출입을 한다는 이유로 금 150엔 이상 500엔 이하(현재 쌀값 환산으로 79-263만 엔)의 벌금을 징수하고 미납자에게는 즉시 한국을 떠날 것을 명하고 유체동산(有体動産)을 몰수”하였다.⁸⁹⁾ 한편으로 도감은 일본인들에게 “화물의 수출을 허가하고 이에 대해 100분의 2의 세금을 징수”했다.⁹⁰⁾ 그는 결과적으로 일본인들의 거주를 용인한 셈이 된다.

배계주는 도감이라 해도 봉급도 없었으며 부하도 없었다.⁹¹⁾ 따라서 일본인 불량배나 범죄를 단속하는 능력은 거의 없고, 섬의 치안은 위기에 놓여 있었다. 또한 자기 생활비나 관아의 경비 등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해야 했다. 도감은 한국인들에게는 당초 미역 수출세와 조선 목료(造船木料)를 징수했을 뿐이므로 재원은 늘 부족하였다. 그 때문인지 도감은 원래는 거주를 인정하면 안 되는 일본인들에게 수출세라는 형태로 세금을 징수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인들이 화물을 수출할 때, 도감은 두 사람을 보내고 2/100의 세금을 대두로 징수하였다.⁹²⁾ 세금의 징수 기간은 우용정의 『울도기』에 의하면 1896년과 1897년만으로 되어 있으나 아카쓰카 쇼스케의 기록 「수출세의 건」에 따르면 『울도기』와 달리 1898년 및 1899년만이 아니라 1900년의 한일합동 조사 당시까지 징세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⁹³⁾ 징세는 배 도감뿐만 아니라, 배 도감

89) 주 88과 같음.

90) 外務省記錄 3532, 「受命調査事項報告書」『蔚陵島に於ける伐木關係雜件』。

91) 울릉도는 1900년 관제 개편(칙령 41호)으로 울도군으로 승격하여 도감 배계주가 1900년 11월 26일에 군수로 임명되었다. 봉급이 지급된 것은 그 이후임.

92) 外務省記錄3532, 「受命事項調査書」『蔚陵島に於ける伐木關係雜件』.

93) 外務省記錄3532, 「輸出税の件」『蔚陵島に於ける伐木關係雜件』.

이 일본에서 소송에 관계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도감 직을 맡았던 오상일(吳相鎰)도 행하고 있었다. 더구나 오상일은 1899년 4월 1일자로 일본인 상인들 24명과 일본인들이 무역을 할 때에는 2/100를 대두로 납세한다는 약조문마저 맺었다.⁹⁴⁾ 이런 납세는 일본정부의 바람대로 울릉도의 일본인 영주자들이 도감으로부터 거주를 보증 받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수출품은 부산 영사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대두, 완두, 보리, 전복, 우뭇가사리, 끈끈이 등이다. 다만 이것은 일본으로의 수출이며, 한국인들이 조선 본토에 보낸 미역 등은 물론 포함되지 않았다. 1897-1899년 수출의 연 평균은 31,890엔이다.⁹⁵⁾ 이 금액의 100분의 2는 640엔, 현재의 쌀값 환산으로는 277만 엔이지만, 『울도기』를 보면 일본인들은 순순히 납부하지 않았던 듯하다. 과세 품목에 관해서는 제한이 없다고 하나, 느티나무는 따로 계약된 것 같다. 도감이 세금을 징수한 증거로서 『울도기』는 오상일에 의한 「일본인 납세 약조표」나 「배 도감 납세태 30 두표(納稅太三十斗票)」, 「오 도감 납세태 140두표」, 오 도감의 「허일인 운거 규목 물금표(許日人運去槐木勿禁票)」 등을 열기하였다.⁹⁶⁾ 이 중에서 「일본인 납세 약조표」는 앞의 「약조문」, 「허일인 운거 규목 물금표」는 아카쓰카 쇼스케 「수명(受命)조사사항 보고서」중의 「도인 입납(島人入納)」으로 보이는데 오 도감이나 배 도감의 「납세태표」에 해당하는 문서는 일본 외무성 기록3532에 보이지 않는다. 그 중 배 도감의 「납세태표」에 관해 외무성 기록은 배 도감이 정세 사실이 정부에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한 장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단지 외무성기록에서는 “황(黃) 도감으로부터 일본인 하마구치(濱口)에게 체납(滯納)을 독촉하는 문서 1장을 얻었다.”고 기록되고 있으니 이 문서가 배 도감 ‘납세태표’에 해당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말하면 황 도감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황 도감은 배 도감의 잘못이라 여겨진다. 이런 엇갈림은 있으나 배 도감도 정세한 것은 두 사료가 일치한다. 정세 방법은 일본인들이 울릉도로부터 화물을 수출할 때 담당자 2명을 파견하여 정세하였다.

94) 상동.

95) 外務省記錄3532, 赤塚正助「蔚陵島調査概況」『蔚陵島に於ける伐木關係雜件』.

96) 禹用鼎, 「六月三日再次密聞」, 『蔚島記』.

그 때문인지 배 도감이 울릉도로 부임한 다음 해인 1897년부터 수출의 자세한 통계가 존재한다.⁹⁷⁾ 그 중 해산물의 수출품은 이미 제5-1절에 쓴 바 전복과 우뭇가사리인데, 그 외의 수출품은 1897년의 경우 끈끈이, 느티나무, 대두, 보리, 완두이다. 수입품에 관해서는 1898년부터의 통계가 있다. 이런 통계는 정수활동에 필요함으로 배 도감이 1897년부터 기초 자료를 만들어 수출세를 징수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배 도감과 오 도감은 1897년부터 1900년 한일합동조사 때까지 수출세를 징수했다고 생각된다.

일본으로의 수출입은 주로 일본인의 중심지인 도동항에서 행해졌으므로 실질적인 도감 관아는 도동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아키쓰카 「울릉도 조사 개황」에 의하면 “도감 관아는 도동이라고 칭하는 곳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울도기』에 따르면 도동은 “도감의 사저가 있는 곳”이라 한다. 도감 관사는 실질적으로는 도동에 있어도, 행정 기구의 명목상은 여전히 태하동에 두었던 것 같다.

느티나무는 1899년에 도감 오상일이 일본인 하타모토(畠本)에게 「규목 벌조전 오백량 병봉상야(楨木伐條錢五百兩併捧上也)」라는 「매하증(賣下證)」과 반출 허가증을 발행하였으므로 도감은 느티나무에 관해서는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 수출세를 징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00량은 100엔에 해당하며 현재의 쌀값 환산으로는 43만 엔에 상당한다. 도감 배계주는 느티나무의 반출을 허가제로 했으므로 밀수출에 관해서는 엄격히 감시하고 있었다. 그 하나의 예로서 그는 1898년에 시마네현의 요시오 만타로(吉尾万太郎)가 “느티나무를 제재하여 도동 해안에 가져간 것을 알아차리고 이에 자기 도장을 찍어 본방(일본, 필자 주)에 수출한 다음 사카이(境)지방 재판소에 느티나무를 되돌리는 소송을 제기” 했을 정도였다.⁹⁸⁾ 도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인 협력자들과 함께 섬에 사는 일본인들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특히 울릉도에 출입하는 일본 배, 그 중에서도 출항하는 배를 주시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감은 1899년에 울릉도에서 독도로 전복 채취나

97) 주36과 같음. 수출 통계표는 1895년부터 시작되는데 1895년과 1896년의 수출품은 간단히 끈끈이만 적었다.

98) 주88과 같음.

상어잡이를 위하여 왕복하는 일본 어선의 동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들의 활동을 통하여 독도의 존재를 잘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울릉도를 기지로 하는 독도에서의 어업을 통하여 울릉도 주민들 사이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보는 의식이 정착된 것이다. 그것이 칙령 41호에 반영되었다고 보이지만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일본인들로부터의 징세는 1900년의 한일합동 조사를 계기로 실시되지 않았다. 징세 사실이 합동 조사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드러났기 때문에 일본인 불법 거주자들로부터의 징세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계속 거주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었다. 일본인 어민들도 계속해서 섬에 공공연히 주거를 가지고 어업에 꼭 필요한 수확물의 건조장이나 작업장을 가질 수 있었다. 원래 그들의 안정적인 어업은 울릉도에서의 거주가 전제 조건이었다. 바꿔 말하면 일본인들의 독도 어업은 그들이 울릉도에 거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은 1899년에 일본 정부에 의한 일본인들의 퇴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는 없었으며, 앞에 기술한 것처럼 오이타현이나 시마네현의 어민 등이 잔류하였다. 그들은 영주자로 된 것이다. 게다가 1900년부터는 일본 정부가 일본인들의 거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으므로 일본인들의 영주 경향은 더욱 강하게 되었다.

8-2. 칙령 41호 이후의 독도 인식과 이용

칙령 41호(1900) 공포 직후의 일본인과 한국인의 관계는 부산의 일본 영사관 보고(1902)에 따르면 “그들과 우리는 무역상 분쟁을 일으키는 일 없이 재류 일본인들과 항상 직접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매우 원활하다.”⁹⁹⁾고 기록됐으나 이는 일본인 불량배들을 제외한 이야기다. 영사관도 인정했듯이 일본인들 “도항자는 대개 무식한 문맹의 무리들인지라 자주 분요를 일으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억누르고 지식이 있는 자는 우자를 속여 심지어는 흉기를 가지고 폭행하고 남의 물건을 강탈하는 일이 있어도 이를 제지하는 자가 없이 도민을 괴롭히는 일이

99) 주88과 같음.

적지 않는"상황이었다.¹⁰⁰⁾ 양국 거주자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예로서, 아카쓰카 영사관보가 기록한 고래 고기의 분배 사건을 들 수 있다. 그들은 일상적인 교역을 할 뿐만 아니라 울릉도에 표착한 고래 고기를 서로 나눌만한 이웃사람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단 고래 고기의 분배를 둘러싸고 싸움이 되자 일본인들은 칼을 휘두를 만한 무리들이었다. 이 폭력사건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그 진상규명이 양국 합동조사단의 조사 항목의 하나로 됐던 것이다.¹⁰¹⁾

그러나 고래고기사건은 오히려 온순한 편이다. 울릉도에서는 일본인들의 살인 사건이 속출하여 시체가 나무에 매달린 채 방치될 정도였다.¹⁰²⁾ 이런 일본인들을 단속하는 것도 목적의 하나로 삼아 1902년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일본인 경관을 울릉도에 마음대로 상주시켰다. 그 결과 울릉도의 일본인들은 경찰권에 필적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주민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인 주민들은 결코 치외법권을 가진 조계(租界)를 형성한 것이 아니다. 일본인 주민들은 어디까지나 울도 군수가 "충분히 보호"할 존재임을 한일 양국의 당국자가 인식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 시찰단'이 독도 및 울릉도를 조사한 사건¹⁰³⁾에서 볼 수 있다. 1906년 3월 울릉도와 독도를 조사한 시찰단 단장 진자이 요시타로(神西由太郎)는 울도 군수 심홍택과의 회담에서 "저는 대일본제국 시마네현의 권업에 종사하는 임원입니다. 귀 섬과 우리들이 관할하는 다케시마는 가깝습니다. 또한 귀 섬에 체류하는 우리 방인도 많습니다. 만사에 간절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심홍택은 "그렇습니다. 체류하는 당신 나라 사

100) 주88과 같음.

101) 外務省記録 3532, 「受命調査事項報告書」『蔚陵島に於ける伐木關係雜件』.

102) 山陰新聞, 「隱岐浦郷通信」, 明治 35(1902)년 1월 30일.

「한국 竹島로 벌이 나가는 자가 마을 내에서 점점 늘어나는 모양이지만, 요새 거기에서 돌아온 자가 수 명 있다. 그 섬은 무정부 상태로서 이웃 마을의 한 사람은 본방인에 의해 살인당하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다고 한다. 작년에도 어산인(御山人) 한명이 똑같이 참살 당했다.」

103) 奧原碧雲의 앞 책 p.78에서는 날씨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울릉도로 피난했다고 쓰고 있으나 당초 계획에는 울릉도에 있어서의 어업 가망이나 어항, 피난처의 조사 등이 예정되고 있었다. (앞의 자료『竹島資料7』p.65 참조). 피난은 외국으로 도항하는 수속을 생략하기 위한 구실이라 생각된다.

람은 제가 충분히 보호합니다.¹⁰⁴⁾”고 말하여 진자이 부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대화나 앞에 쓴 배 도감에 의한 벌금이나 수출세의 징수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인 주민들은 울도 군수 통제 하에 놓여 있었던 것은 명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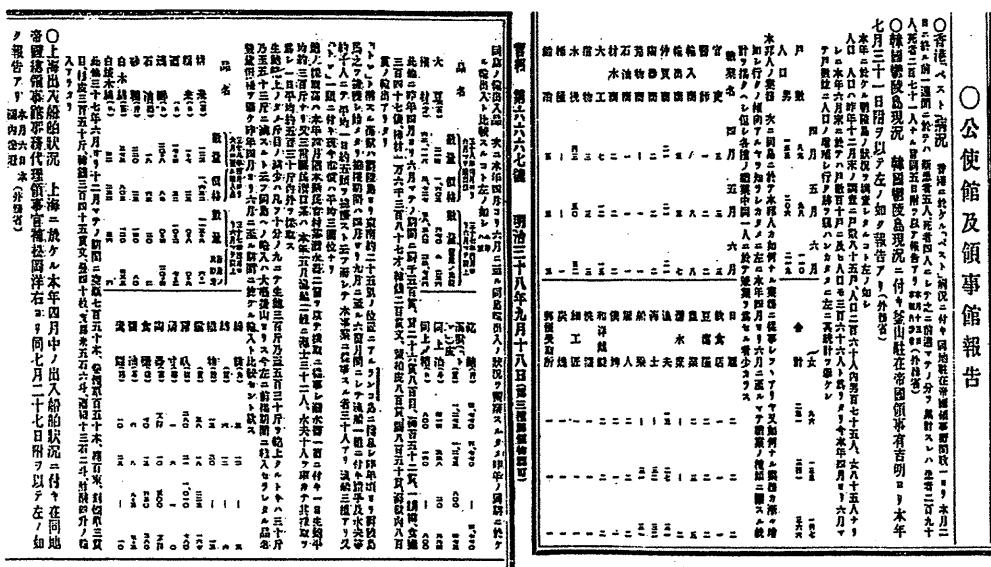
칙령 41호 이후의 독도에서의 어업은 전복 채취 외에 강치잡이가 1903년에 시험적으로 행해졌고, 이듬해인 1904년부터 러일전쟁의 특수 수요를 배경으로 울릉도 및 오키도를 기지로 하여 본격화되었다. 그 중에서 울릉도를 기지로 한 강치잡이는 앞에 말한 것처럼 1904년과 다음 해에 한국인과 일본인의 공동으로 행해졌다. 그 결과 1904년에 군함 니타카의 일지에 “리양코루도암(岩), 한인은 이를 독도라고 쓰고”라고 기록됐듯이 한국인은 독도라는 이름을 기록에 쓰게 됐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군수 심홍택도 독도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1906년 심홍택은 시마네현 ‘다케시마 시찰단’이 내방한 앞의 사건을 강원도 관찰사서리 이명래(李明來)에게 알렸는데, 그 보고서에 “본군 소속의 독도가 백여 리 떨어진 바다에 있다.”고 적어서 독도는 울도군에 속한 섬이며 군수의 관할 하에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이것은 1899년에는 시작됐던 울릉도 주민들에 의한 독도에서의 어업이 도감이나 군수에 의해 충분히 파악된 결과이다.

군수나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보는 인식은 부산의 일본 영사관도 같았다. 일본 영사관도 울릉도 주민들을 통하여 리양코도(독도)를 인식한 탓으로 독도를 일관되게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다루었다. 예를 들어 영사관이 1902년에 외무성에 보고한 「울릉도 상황」에서는 앞에 기술한 것처럼 “본도 정 동쪽 약 50해리에 세 개의 작은 섬이 있어 이를 리양코도라고 하고 일본인들은 마쓰시마라고 부른다.”고 적었다. 마쓰시마는 독도의 일본 옛 이름이다. 이 보고는 외무성 통상국 발행의 『통상회찬』 234호에 게재되었으므로 외무성 당국자도 같은 인식을 가졌을 것이다. 더구나 일본 영사관은 1905년에도 외무성에 보고한 「울릉도 현황」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도라고 부르는 바다침승은 울릉도에서 동남쪽 약 25리에 위치하는 랑코도에 서식하

104) 山陰新聞, 「竹島土產」 明治 39(1906)년 4월 1일.

고”라고 적고 일관되게 랑코도(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인식하였다. 영사관이 이 보고서를 적은 것은 1905년 7월, 즉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뒤였다. 일본 정부는 독도의 영토 편입을 관보에 공포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는 비밀리에 처리했으므로 일본 영사관조차 랑코도가 일본의 ‘신 영토 다케시마’임을 알지 못한 것 같다. 게다가 외무성은 「울릉도 현황」을 『통상휘찬』 제50호에 게재했으므로 외무성의 당국자도 똑같은 인식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울릉도 현황」은 그대로 일본 『관보』(도판1)에도 게재되었다.¹⁰⁵⁾ 『관보』 담당자마저 랑코도(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가 됐던 것이다.



| 도판 1 | 『관보』 1905년 9월 18일, 일본 정부도 랑코도(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9. 독도(獨島)의 호칭에 관한 고찰

일본 해군 군함 니타카(新高)의 행동일지가 일본인이 “리양코도라고

105) 『官報』, 明治 38(1905)년 9월 18일.

호칭”하던 섬을 한국인이 “獨島라고 쓰며”라고 기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리양코도에 대한 한국인의 호칭명과 필기명이 달랐던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울릉도 주변의 주요 섬의 호칭명과 필기명이 달랐던 것에서도 짐작된다. 예를 들면 울릉도 바로 동쪽에 있는 죽도(죽서)는 이규원의 「울릉도 외도」에 “竹島”, 부산의 일본 영사관 보고서에 “뎃세미(テッセミ)…竹島¹⁰⁶⁾” 및 “데쓰세미(テツセミ)…竹島¹⁰⁷⁾”, 수로부 해도에는 “Tei Somu 竹嶼¹⁰⁸⁾”라고 기록되었다.

이것은 섬의 필기명이 竹島 혹은 竹嶼 호칭명이 한국어로 ‘대나무섬’을 의미하는 ‘댓섬’이며 이것이 일본식으로 가타카나로 デツセミ 등으로 표기된 것이다. 다음에 관음도인데 수로부 해도에는 “Somoku Somu 鼠項島¹⁰⁹⁾”(도판2, 3), 일본 영사관의 니시무라 게이조(西村鉢象) 보고서에는 “島牧…觀音島¹¹⁰⁾”, 아카쓰카 쇼스케 보고서에는 “島牧¹¹¹⁾”(도판4), 히가키 나오에 복명서에는 “觀音崎 島項¹¹²⁾”(도판5)이라고 기록되었다. 이들 鼠項島나 島牧, 島項은 이규원 「울릉도 외도(外圖)」(1883)에 그려진 ‘島項’의 훈독 ‘섬목’에 유래하는 것이 분명한다. 섬목은 관음도와 울릉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목으로 비유하여 이름 지어진 것이다. 현재도 섬목은 관음도 대안(對岸)의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섬의 호칭명과 필기명이 다른 예는 흔히 있지만 독도도 그렇다. 獨島라는 필기명은 기록상으로는 앞에 쓴 것처럼 1904년 및 1906년에 확인되는데 1923년에도 “조선에서는 獨島라고 쓴다.”고 『시마네현

106) 外務省記錄 616-10, 「明治三十五年蔚陵島狀況」, 『釜山領事館報告二』, 1902. 「뎃세미도(テッセミ島)는 와달리(臥達里) 앞바다에 있다. 본방인은 이를 다케시마(竹島)라고 속칭한다」

107) 「韓國蔚陵島事情」『通商彙纂』, 제234호, 1902.10.16, p.43.
「데쓰세미도(テツセミ島)는 와달리(臥達里) 앞바다에 있다. 본방인은 이를 다케시마(竹島)라고 속칭한다」

108) 水路部, 「海圖 제306호 朝鮮東岸 竹邊灣至水源端」, 1909; 박병섭, 「시모죠 마사오(下條正男)의 논설을 분석한다(2)」, 『독도연구』제7호, p.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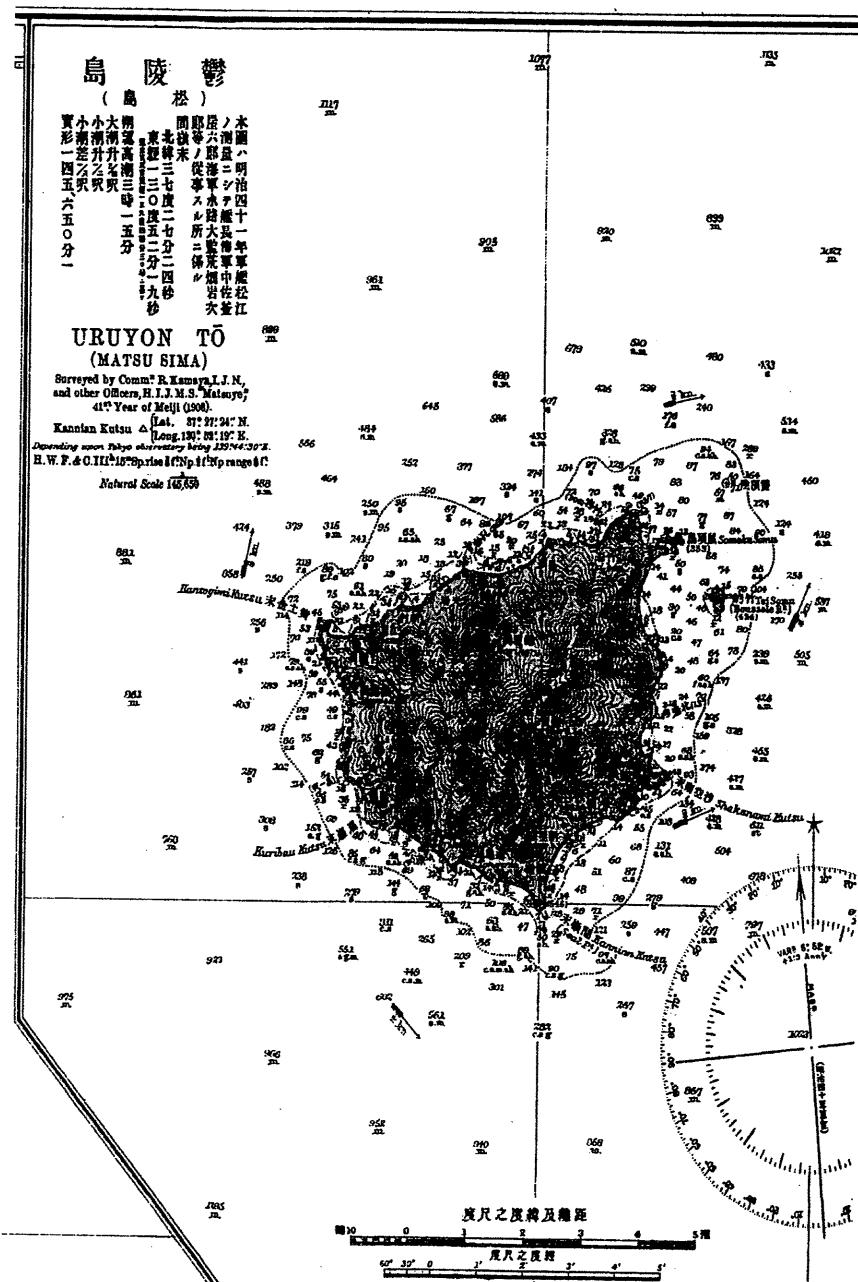
109) 상동.

110) 주 53과 같음.

111) 外務省記錄 3532, 「蔚陵島調查概況」付屬地圖, 『蔚陵島に於ける伐木關係雜件』.

112) 外務省記錄 3824, 「蔚陵島出張復命書」付屬地圖, 『朝鮮國蔚陵島へ犯禁渡航ノ日本人ヲ引戻處分一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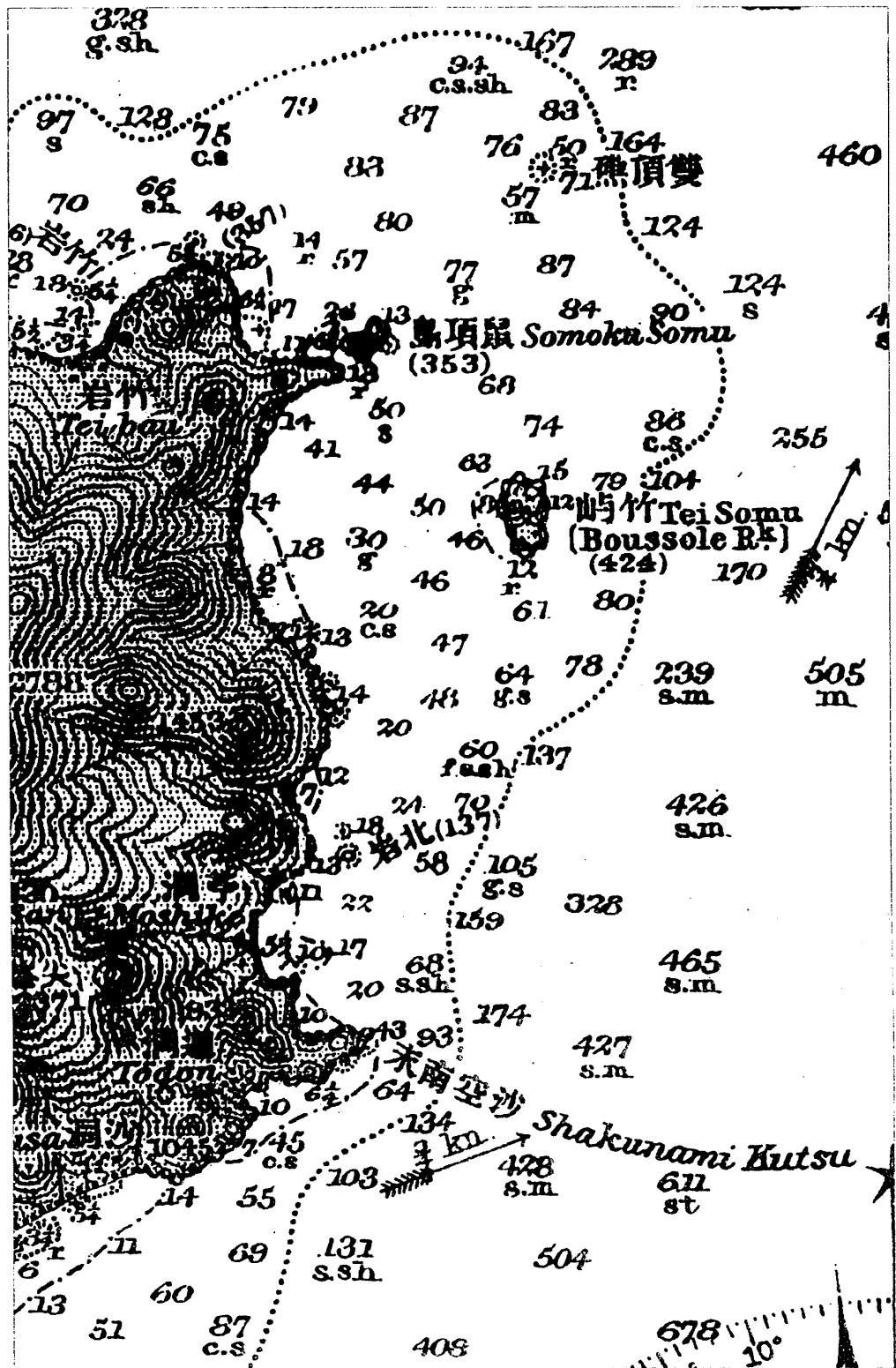
사(島根縣史)』에 기록되었다.¹¹³⁾ 이 필기명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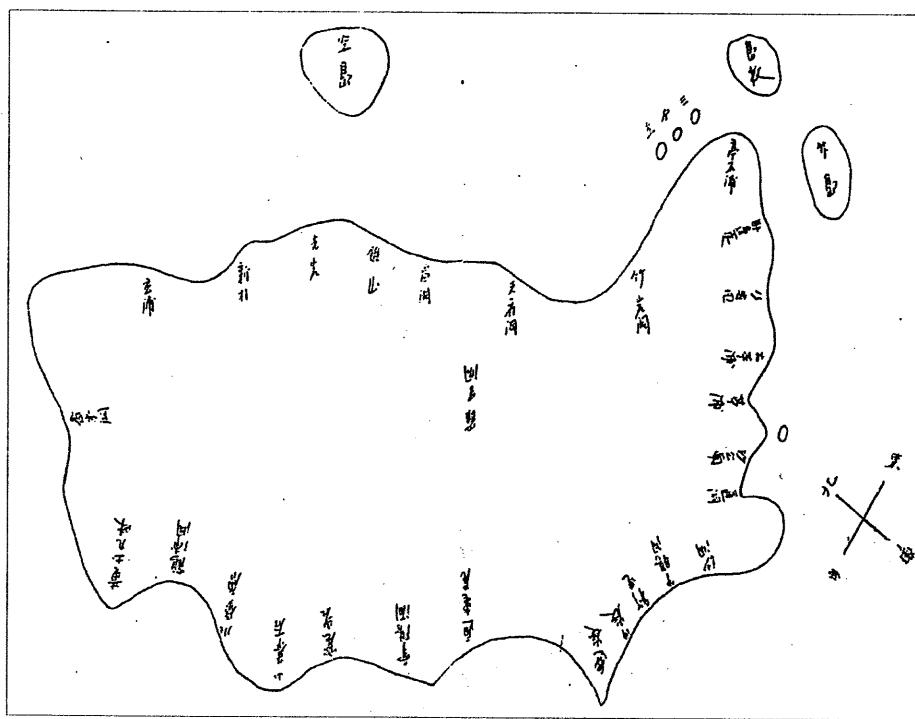
水路部発行「海図306号」1909.6.18

| 도판 2 | 수로부 해도 306호(1909) 울릉도 부근

113) 鳥根縣教育会편찬·발간, 『島根縣史』, 1923, p.690.



도판 3 | 죽도 서항도 부근 확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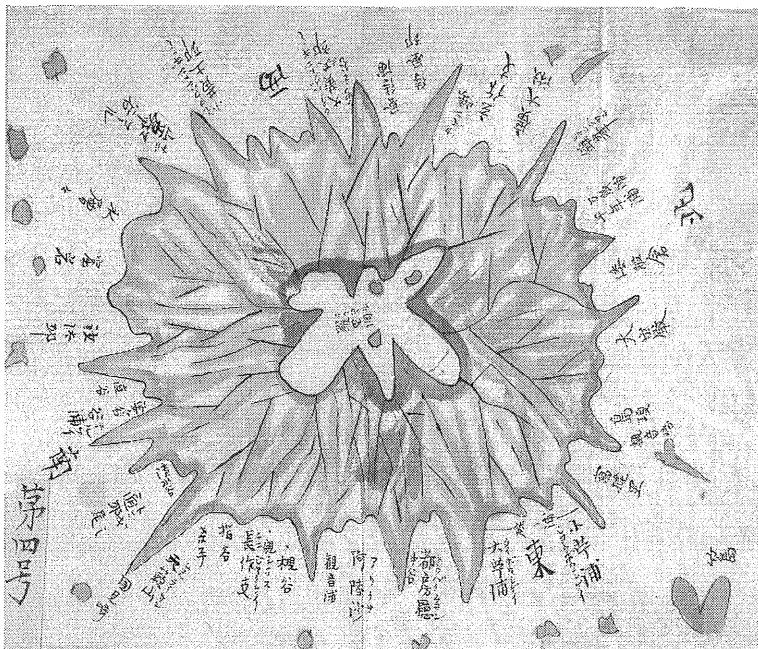
| 도판 4 | 赤塚正助「鬱陵島調査概況」付属地図

한편, 獨島의 호칭명은 「남선(南鮮)경제신문」에 의하면 1947년에는 독섬이었다.¹¹⁴⁾ 이 신문은 獨島에 파견된 '과도정부 獨島현지조사단' 및 '조선산악회 울릉도조사단'과의 합동조사를 보도한 기사 속에서 獨島를 '독섬'이라 표기하였다. 마찬가지로 합동 조사에 참가한 조선산악회 회장 송석하(宋錫夏)도 조사보고 기사 「고색 창연한 역사적 유적 울릉도를 찾아서」에서 "울릉도에서 다시 동편으로 48해리를 가면 한때 각광을 받은 독섬(獨島)이 있다."고 쓰고 獨島의 호칭명이 독섬임을 밝혔다.¹¹⁵⁾ 또한 『새한민보(韓民報)』에 의하면 독섬 외에 돌섬이란 호칭명도 사용됐다고 한다.¹¹⁶⁾

114) 「南鮮經濟新聞」, 1947.8.28, “독도는 이런 뜻”; 鄭秉峻, 「解放後韓國の獨島に對する認識と政策(1945~51)」,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5-2, 2008, p. 22에서 인용.

115) 宋錫夏, 「古色蒼然한 歷史의 遺跡 鬱陵島를 찾어서」, 『國際報道』 제3권 1호, 國際報道聯盟, 1948년 1월, p.328.

116) 「돌섬은 우리의 섬」, 『세한민보』 2-13, 1948, p.11; 鄭秉峻, 앞의 논문, p.



| 도판 5 | 히가키 나오에 「복명서」 부속지도 (1883)

그 후 1948년에는 영어로 'Docksum'으로 표기된 것이 미국의 공문서에서도 확인된다. 즉 1948년 한국 우국노인회(Patriotic Old Men's Association)가 연합군 SCAP의 맥아더 원수에게 한국의 영토로서 울릉도, 대마도, 파랑도와 아울러 'Docksum' 즉 독섬을 인정하도록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도판6).¹¹⁷⁾ 이런 사실 등은 獨島가 역사적으로 독섬 혹은 돌섬이라 호칭됐음을 의미한다. 돌섬의 뜻은 '돌의 섬'이며 독섬도 다음 절에서 서술하듯이 전라도 방언으로 똑같이 '돌의 섬'을 의미한다.

22에서 인용.

117) "Request for Arrangement of Lands Between Korea and Japan," by the Patriotic Old Men's Association, Seoul, Korea (August 4, 1948). <http://dokdo-research.com/page30.html>에서 인용.



THE FOREIGN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POLITICAL ADVISOR

No. 612

FOR JAPAN

UNCLASSIFIED

OPTION
forward to

TO: [Signature] 6, 1948.

Subject: Korean Petition Concerning Sovereignty of "Docksum",
Ullungo Do, Tsushima, and "Parang" Islands.
L.S. 017
895.017

The Acting Political Advisor has the honor to enclose a verbal copy of a petition dated August 5, 1948 sent to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by the Patriotic Old Men's Association, Seoul, Korea, requesting that favorable consideration be given Korea's claim for the return of "Docksum" (said to be Takehama or Liancourt Rocks), Ullungo Do (Utaryo To), Tsushima, and "Parang" Islands. "Parang" Island cannot be identified by this advisor.

The petition attempts to trace Korea's historical interest in these islands and to illustrate how Japan has used the islands as stepping stones for aggression upon the continent of Asia. In this connection reference is made to the Mission's despatch No. 1270, September 23, 1947, transmitting Part IV of a study by the Japanese Foreign Office entitled "Minor Islands Adjacent to Japan's Coasts"; Part IV of this study discusses Japan's claim to Takehama and to Utaryo To.

Although nothing is known concerning the organization and purposes of the Patriotic Old Men's Association, it is believed that the enclosed petition may be indicative of Korean thinking in regard to the disposition of the islands in question.

Enclosure:

Petition dated August 5,
1948 sent to SCAP by the
Patriotic Old Men's Association,
Seoul, Korea.

Original and copied to the Department.

UNCLASSIFIED

cc: U.S. Representative, Seoul.

| 도판 6 | 우국노인회가 SCAP에게 제출한 '한일간의 영토에 관한 탄원서'
獨島를 'Docksum', 즉 독섬으로 표기함. (1948.8.4)

10. 석도(石島)의 호칭에 관한 고찰

대한제국 칙령 41호(1900)에 등장하는 石島의 호칭명인데 일반적으

로 이것도 필기명과는 달랐던 것을 일본 수로부가 발행한 수로지에서 알 수 있다. 한국 각지에 있는 石島를 한말기의 수로지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조선 수로지』 제2판, 1899년 발행, 石島는 1 곳
- 『조선 수로지 추보』 제1, 1902년 발행, 石島는 1 곳
- 『조선 수로지』 제2개판, 1907년 발행, 石島는 6 곳
- 『일본 수로지』 제6권, 1911년 발행, 石島는 7 곳

이들 수로지는 도합 7개소의 石島를 기재했는데 그 중 강원도 거진(巨津)에 있는 石島와 경기도 한강 근해의 매음수도(妹音水道)에 있는 石島의 읽기는 알 수 없다. 기타 石島에는 아래 '…'와 같이 토가 달렸다.

충청남도 비인만 외연(外煙)열도의 石島	'도루소무'
상동 호도(狐島) 남쪽의 石島	'마쿠소무'
경기도 한강구 앞바다 우도(隅島) 서쪽의 石島	'도루소무'
황해북도 대동만 대도(大島) 서단의 石島	'도리소무'
전라남도 소안(所安)군도 소안항의 石島	'도토쿠소무'

이처럼 수로지에서 石島라고 표기되어도 호칭명은 시모죠의 주장과 달리 '소쿠토'나 '석도'라고 음독되지 않았고¹¹⁸⁾ '도루소무' 등으로 훈독됐던 것이다. 호칭명 '도루소무', '도리소무' 등은 돌섬에 유래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호칭명 '마쿠소무'는 돌뿐인 열등한 섬 '막섬'의 뜻으로 명명된 것일까. 마지막의 호칭명 '도토쿠소무'는 위 수로지 모두에 기술되었다. 예를 들면 『조선 수로지』 제2판에는 이렇게 기술되었다.

소안항(所安港)

소안, 보길(甫吉), 노아(露兒)의 3물길로 이루어지며 남북으로 통한다. … 해당되는 물길 중 위험한 점탄(點灘)이 있다. 그 하나는 서암각(書岩角)… 또 하나는 石島(도도쿠소무)의 동북 약간 동쪽 4鏈에 있는 암초¹¹⁹⁾

118) 박병섭, 「시모죠 마사오(下條正男)의 논설을 분석한다(2)」, 『독도연구』 제7호, p.132.

119) 崔書勉씨의 가르침을 받음; 水路部, 『朝鮮水路誌』 제2판, 1899, p.164.

石島에 달려 있는 토 '도토쿠소무'는 石島의 훈독인 독섬에서 유래한다고 짐작된다. 한국어에서 초성(初聲)의 탁음은 청음으로 발음되므로 '독섬'은 'Tok Seom'이라고 발음된다. 그리고 石의 훈독은 표준어로 '돌'이지만 경상도 일부 지역이나 전라도에서는 '독'이라고 훈독된다.¹²⁰⁾

수로지에 있어서 '도토쿠소무'라고 기록된 소안항의 石島는 현재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면 충도리에 속한다. 이 섬은 신용하에 따르면 지금도 독섬으로 호칭된다.¹²¹⁾ 이를 『한국지명총람』에서 확인하면 충도리의 '석도(石島)' 란은 '독섬' 란을 보도록 표시되어 있으며 '독섬[석도]' 란을 보면 "육도 남쪽에 있는 섬. 돌로 이루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¹²²⁾ 신용하는 이 외에도 완도군 노화면 고막리에 있는 석도도 독섬으로 호칭된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서 확인하면 고막리의 '석도 (石島)' 란은 '독섬' 란을 보도록 표시되어 있으며 '독섬' 란을 보면 "솔섬, 송도, 석도"라고 기재되어 있다.¹²³⁾ 고막리의 석도는 독섬 외에 별명도 있지만 역시 전라도에서는 石島를 독섬으로 호칭한다.

대한제국 칙령41호(1900)에 기재된 石島인데 이 호칭명을 나타내는 자료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 호칭명은 그 당시 울릉도에서 다수를 차지했던 강원도나 경상도의 호칭명인 '돌섬'이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지명은 선주 사람들이 지은 이름을 계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울릉도에서도 선주 사람들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울릉도에서 최초의 거주민들 140명은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등에 의하면 전라도 출신자가 가장 많아 115명을 차지하였다. 그 중에는 전라도 완도군 石島근처에 있는 삼도(거문도)로부터 3단체 49명, 초도로부터 2단체 33명, 도합 8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 전라도 사람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石島를 독섬으로 호칭했으므로 울릉도에서도 그 호칭이 계승됐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제국 칙령 41호의 石島도 울릉도에서는 '독섬'으로 호칭됐을 것이다. 그런 배경에서 호칭명 '독섬'이나 'Docksum'이 1947년

120) 小倉進平, 『朝鮮語方言の研究』上권, 岩波書店, 1944, p.218; 박병섭·나이토 세이추, 『독도=다케시마 논쟁』, 보고사, p.146, 2008.

121) 신용하, 『獨島의 民族領土史 研究』, 지식산업사, 1996, p.197.

122)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제15권, 1984, pp.315-316.

123) 위의 책, p.321.

경에도 확인되었던 것이다. 그 즈음에는 울릉도에서 다수를 차지한 경상도나 전라도 출신자의 호칭명 '돌섬'도 동시에 사용됐던 것이다.

所安港

所安、甫吉露兒ノ三島間ノ水道ヨリ成リ南北ニ通ス○淺堆アリテ該水道ノ兩側ヲ形造リ且該堆ハ非常ノ陡界ヲ成シ半尋乃至二尋ヨリ俄然五尋乃至十尋ニ變スルヲ以テ能ク港圖ヲ熟観スルヲ要ス○該水道中又危險ナル點灘アリ其一ハ書岩角ノ北東ノ東約三鏈半ニアリテ其水深三尋又一ハ石島ノ北東

所安港孟仙里附近ニ於テハ朔望高潮十時三十三分○大潮升十一呎小潮升七呎○高潮ノ時期ハ不規則ナリ偏南風アル時ハ漲潮ハ落潮ヨリモ大ニ長ク又潮升ヲ増ス

白日港

朝鮮南岸ノ西端ト白日島ノ間ニアリ其西口北角ハ海南角ト稱シ其背後ハ高山脈亂走スルヲ以テ初來ノ者ト雖此港ヲ認ムルノ好標トナル

白日堆

港ノ中心ヨリ約八鏈間東方ニ擴延セル狹堆ニシテ其水深一尋乃至三尋其西端ヨリ白日島ノ南西端ハ南々東ト東ニ當リ相距約九鏈ナリ

黑日堆

此堆ハ沙殼ヨリ成リ黑日島北側西端ヨリ北東方約五鏈ニ擴延シ其水深一呎半乃至三尋○此堆ノ北界ハ白日島ノ南西端ト大花島ノ北巔トヲ一線ニ望ム

| 도판 7 | 전라도의 石島를 '도토쿠소무'라고 읽은『조선 수로지』 제2판

한편, 지명의 필기명은 훈독과 음독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섬목'의 경우 '목'을 훈독하여 '도항(島項)'으로 쓰거나, 음독하여 '도목(島牧)'으로 썼던 것이다. 일본의 예로는 교토(京都)에서 누구나 잘 아는 '가모가와'는 '가모'를 훈독으로 '鴨', 음독으로 '賀茂'라고 쓰고, 鴨川라고 표기하거나 賀茂川라고도 표기했다. 지금은 하천법의 규정에 따라 鴨川이 정식명칭으로 되고, 통례로서 鴨川 상류의 가모가도(賀茂街道)를 따

르는 지류를 賀茂川이라 칭한다. 이처럼 지명은 먼저 발음이 있고, 필기명은 발음에 맞추어 다양하게 표기된다. 마찬가지로 독섬도 훈독으로 石島라고 표기되기도 하고 음독으로 獨島로 표기되었던 것이다.

11. 우산도 탐색 실패에 관한 고찰

17세기 말 안용복의 도일 사건을 계기로 조일 양국에서 “우산도는 일본에서 이르는 마쓰시마(독도)이다.”라는 기사가 『동국문헌비고』, 『숙종실록』, 『만기요람』 등 관찬서에 기술됐으며, 많은 지도에도 우산도가 그려졌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대한제국 칙령 41호에는 우산도의 이름이 사용되지 않았다. 이 칙령 발표 전년에 황성신문(1899.9.23)은 우산도에 관한 기사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울릉도 사황’

울진의 동해에 한 개의 섬이 있으니 이것을 울릉이라 한다. 그 부속한 작은 6개의 섬 가운데 가장 현저한 것은 우산도와 죽도이다. 대한지지에 의하면 울릉도는 고대의 우산국이다.

이 기사는 『대한지지』에도 기술된 우산도를 죽도(죽서)와 다른 섬으로 해석한 점에서 중요하다. 『대한지지』 부속 지도에는 울릉도 남쪽에 작은 섬 5개와 그보다 조금 큰 우산도가 동북동쪽에 그려져 있다. 이 지도는 울릉도 동남에 ‘선박처(船泊處)’라고 쓰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같은 시기의 대한제국 학부 「대한여지도」(1898)를 바탕으로 한 것 같다. 이들 지도에서 우산도는 자칫하면 죽도(죽서)로 잘못 보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1711년에 울릉도 수토관 박석창이 작성한 『울릉도 도형』에서 울릉도 바로 동쪽에 작은 섬이 그려져 있는데 그 곁에 “해장죽전 소위 우산도(海長竹田 所謂于山島)”라고 기입되어 있듯이 때로는 우산도를 죽도(죽서)로 보는 그릇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인식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에 의해 명확히 부인되었다. 그 영향을 받았는지 황성신문도 우산도를 죽도(죽서)와 별도의 섬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사의 우산도로서

가능성이 있는 섬은 관음도 혹은 독도이다. 이 중에서 관음도는 그 당시의 지도에 관음기(觀音崎) · 도항(島項)이나 섬목(島牧)이라고 기록됐으므로 우산도로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일찍이 많은 지도에 우산도와 울릉도가 그려졌는데 그런 지도에서 우산도가 죽도(죽서)와 혼동될 여지는 있어도 관음도와 혼동될 여지는 전혀 없다. 그리고 한국의 사정을 잘 아는 일본인도 황성신문 기사의 우산도를 일본에서 말하는 마쓰시마, 즉 독도라고 해석하였다. 한국에서 내각보좌관으로서 기록, 편찬, 관보 등의 사무를 감독한 쓰네야 세이후쿠(恒屋盛服)는¹²⁴⁾ 1901년 1월에 출판한 『조선개화사』 「울릉도」에서 앞의 황성신문 기사를 인용하여 울릉도의 속도를 “대소 6도가 있다. 그 중 현저한 것을 우산도(일본인은 마쓰시마라고 이름지었다)와 죽도라고 한다.¹²⁵⁾”라고 기술하였다. 그 당시 일본은 마쓰시마를 울릉도로 한다든지 리양코도로 한다든지 섬 이름을 혼동하고 있었으나 쓰네야가 말하는 마쓰시마는 문맥상으로 울릉도가 아닌 일본 고래의 마쓰시마 즉 독도를 가리키므로, 그는 우산도를 마쓰시마(리양코도) 즉 독도라고 올바르게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도 쓰네야와 같은 인식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만약 한국 정부가 우산도를 현재의 독도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면 칙령에는 石島가 아니라 수많은 지도나 관찬서에 기재된 유서 깊은 우산도의 이름을 당연히 사용했을 것이다. 한국 정부가 우산도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필자는 그 이유를 정부가 우산도의 존재를 현지에서 확인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1882년에 이규원이 울릉도를 조사했을 때 국왕으로부터 우산도나 송죽도 등 여러 섬의 존재를 자세히 조사하도록 명을 받았는데¹²⁶⁾ 그는 우산도 및 송죽도를 확인 못했다. 그는 『계초본(啓草本)』에 “송죽우산(松竹于山) 등의 섬을 현지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다 근방의 작은 섬으로 보

124) 恒屋盛服, 『朝鮮開化史』, 博文館, 1901, p.4(序文).

125) 위의 책, p.34.

126) 『承政院日記』, 高宗19(1882) 년 4월 7일조; 신용하, 『獨島領有權資料의 探究』,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p.17에서 인용. “왕께서 가로되, 혹은 칭하기를 莖山島라 하고 혹은 칭하기를 松竹島라 하는 것은 모두 東國輿地勝覽이 만든 바다. 또한 松竹島라고 칭하는데 莖山島와 더불어 3島가 되고, 모두 鹽陵島라고 통칭하기도 한다. 그 형편을 모두 검찰하라.”

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근거로 삼을 지적도가 없고 이끌어줄 지표도 없다.”고 기록하고 지도 「울릉도 외도」에는 죽도와 도항을 그렸을 뿐이다. 당시의 울릉도 주민들도 이규원도 우산도의 정확한 소재를 몰랐던 것이다. 이는 매일신보(1913. 6. 22)의 다음 기사에서도 뒷받침된다.

우산도 탐험 중지

경상남도 울도군 서면 김원준(金元俊)은 울도로부터 동북 방향 약 4, 50리 를 거(距)하야 위치를 정한 우산도라 하는 무인도가 유하다 한즉 차(此)를 발견하면 단체로 이주할 계획인데 찬성자를 모집하고 그 비용이 매인에 대하여 금4원 거금하야 약 100원으로 범선을 고입(雇入)한 후 3명의 승조(乘組) 탐색하기로 출발할 사(事) 결정하며 찬성자가 30명에 달하엿더니 우(右) 우산도는 기(其) 실제의 전설이 유하나 증(曾)히 십 수년 전 동지 내선인(同地內鮮人)의 연합으로 사선(射船)을 고입하야 탐색하엿스나 발견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근년에 해(海) 항로가 빈번하야도 아주 차를 현인(現認)하엿다는 사(事)가 무(無)하고 해도에도 현(現)한 자 무(無)한즉 가령 존재하다 할지라도 차를 발견함은 용이한 사가 아니오 반히 무익한 비용을 소비함에 불과하겠다고 중지하엿다더라

우산도가 울릉도에서 하루의 거리 떨어진 동북쪽에 있다는 설은 오래 전에 안용복도 전하고 있었다.¹²⁷⁾ 울릉도 주민들은 우산도가 울릉도 동북쪽 4,50리 떨어진 곳에 있다는 전설을 믿고 1913년에 우산도 탐색을 계획했으나 성공할 가능성성이 희박하므로 중지했다.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우산도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위 기사가 보도된 시기는 1913년 이므로 그로부터 십 수년 전이라 하면 1900년 전후이다. 즉 우용정과 아카쓰카 쇼스케가 울릉도의 합동조사를 실시한 해 전후에 우산도의 탐색이 행해진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아카쓰카 쇼스케 「울릉도 조사 개황」 부속 지도(도판4)이다. 이 지도에서 울릉도 동북쪽에 ‘공도(空島)’가 도목(관음도)이나 죽도(죽서)보다 크게 그려졌다. ‘공도’는 울릉도 북쪽 해안에 있는 공암(孔岩)과 발음이 일부 통하므로 혹시 공암과 혼동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부속 지도에서 공도의 크기는 공암보다 훨씬 크며 위치도 훨씬 멀기 때문에 공암과 별도로 존재한다고 생각됐을 것이다.

127) 『竹島紀事』, 元祿6년 11월 1일; 박병섭, 『안용복사건에 대한 검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p.19.

짐작하건대 부속 지도는 공도를 전설의 우산도로 생각했지만 우산도의 존재가 확실치 않았으므로 우산도의 이름을 피하여 무인도의 뜻으로 '공도'라고 이름 지었던 것이 아닐까? 그 부속 지도에는 히가키 나오에의 울릉도 지도(도판5)에 보인 일본식 지명이 일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지도의 출처는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 측에서 제공됐다고 보인다. 『울도기(鬱島記)』에 의하면 아카쓰카와 우용정 등 한일 합동 조사단은 1900년 6월 4일에 배를 타고 섬 주위를 순찰했는데 그럴 때 도감 배계주가 아마 이 지도를 합동조사단에 제공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우용정은 이 지도에 그려진 '공도'에 당연히 관심을 가졌을 것이며, 칙령 41호의 청의에 관여하기 전에 '공도' 확인에 노력했을 것이다. 그것이 매일신보에 소개된 우산도 탐색이 아닌가라고 추정된다. 만약 그 탐색에서 '공도'가 우산도임이 판명됐다면 '공도'는 물론 칙령 41호에 우산도 이름으로 기술됐을 것이다. 우산도는 많은 관찬서에 기재된 역사적인 명칭이므로 당연히 그 이름이 칙령에 기재됐을 것이다. 그러나 우산도 탐색에 실패했으므로 존재가 애매한 우산도 이름을 칙령에 기재하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우산도는 서울 등 중앙에서는 황성신문 기사에 보이는 것처럼 죽도(죽서) 외의 섬으로 인식됐으나 그것은 관념적인 존재에 머물렀으며, 현지 울릉도에서는 『동국문헌비고』나 『만기요람』 등 관찬서에 기재된 "우산도는 일본의 마쓰시마이다."라는 인식이 전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므로 우산도는 구체적인 위치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전설상의 섬으로 되어버렸다. 결국 우산도를 독도라고 비정 못했기 때문에 우산도는 칙령 41호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12. 결 론

한말 울릉도 해역의 어업이라 하면 울릉도에 가까운 강원도나 시마네현 오키도의 어민이 출어하는 모습을 연상하기 마련이지만, 실은 한국 어민은 멀리 전라도에서, 일본 어민은 처음에는 야마구치현이나 오이타현에서 왔다. 오키도민이 울릉도로 본격적으로 출어한 것은 1894

년 이후다. 그 당시의 어선은 작은 범선이며 동해의 거친 파도에 견뎌 울릉도로 출어하기 위해서는 개조된 어선이 필요했으므로 어업의 선진 지역 외의 어선은 울릉도로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한국 어민의 경우는 전라도 거문도 등으로부터 매년 많은 어민이나 장인이 도래하여 울릉도에서 나무를 베고 배를 만들며 미역을 채취하여 출신지로 돌아갔다. 미역 채취는 한국인들의 독점이며 일본인들이 마음대로 채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역 외에 한국인의 어업은 거의 보잘 것 없었다.

한편 일본인들의 어업은 각 시기에 따라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 일본 어민의 침어기인 제1-1기(1876~1883)에는 조선 정부의 공도 정책으로 인하여 거의 무인도와 다름없었던 울릉도로 일본인들이 관민 일체가 되어 침입하여 전복을 따거나 나무의 도별을 하였다. 그 계기를 마련한 인물은 만국공법(국제법의 전신)의 일인자인 해군경 에노모토 다케아키다. 그는 울릉도가 무주지라는 구실을 삼아 민간인의 거주 실적을 쌓아 일본 영토로 편입하려고 도모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침입을 조선 정부가 알게 되어, 양국의 외교 교섭 끝에 모든 일본인들은 1883년에 울릉도에서 쇄환되어 야마구치현이 말하는 '울릉도 일건'은 끝났다.

제1-2기(1883~1894)는 통상 장정에 의한 어업기인데 이 조약으로 인하여 울릉도에서의 일본인들의 어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울릉도는 개항장이 아니므로 일본인이 어업 외에 교역을 한다든지 거주하는 일은 위법이었다. 그래서 1888년에 오이타현에서 울릉도로 전복을 따러 온 어민이 문제가 되었다. 원래 전복은 채취한 뒤 반드시 현장에서 건조 및 가공 작업이 필요하므로 일본인 어민들은 울릉도에 축실(築室) 즉 오두막을 지었는데 그것이 조약 위반이 되어, 전복을 몰수당하는 사태로 되었다. 이 사건은 조·일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끝에 조선이 울릉도의 어업을 인정하여 전복을 되돌려 주어서 해결되었다. 그러나 축실은 위법임을 양국이 확인하였다. 다음 해 오이타현의 어민은 전복을 땖을 뿐만 아니라 위법인 도자기 교역을 했기에 화물은 몰수당하고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에 불만을 가진 오이타현의 어민은 난동을 피우고 외교상의 문제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사건 후 당분

간은 작업장 설치가 애로가 되어 일본인들의 울릉도에서의 어업은 거의 없었던 듯하다.

제2-1기(1894~1899)에는 나무 도벌을 위하여 침입한 일본인들의 거주가 일상화되었다. 그래서 일본인 어민들도 불법이지만 울릉도에 마음대로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작업장 설치의 장애가 사라졌다. 더구나 어획물 수출에 있어서 수출세를 지불함으로써 울릉도 도감으로부터 거주를 보증받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자연히 어업이 번성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의 잠수기 어업자가 쇄도하여 전복이나 우뭇가사리를 남획하여 1897~1899년의 3년간에 도합 12,560엔, 현재의 쌀 값 환산으로 5,410만 엔의 수입을 올렸다.

그런데 울릉도에서의 일본인들의 거주를 도감이 허용했을지라도 정부에 의해 허용된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나 러시아 정부의 일본인 퇴거 요구를 일본 정부는 받아들여 1899년에 일본인 주민들에게 일단은 퇴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울릉도에 깊이 뿌리를 내린 일본인들은 퇴거 명령을 무시하고 영주하는 자도 많았고 그 중에는 어민이 6명 있었다.

제2-2기(1899~1904)가 되어 일본 정부는 제국주의적인 세력 확장을 위해서도 울릉도에서의 일본인들의 거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1900년 한일 공동에 의한 울릉도 조사를 거쳐 일본 정부는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거주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등 일본인들의 정주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울릉도의 일본인 문제는 한일 양국 정부간에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되었는데, 한국 정부는 일본인들을 배제할 힘이 없었으며 일본인들의 영주 경향은 한층 강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일본인 어민들은 울릉도에 안주하여 작업장을 설치하여 어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인들의 어업은 전복이나 해조채취 외에 1899년경부터는 오이타현 어민에 의한 상어잡이가 자주 이루어진 것을 비롯하여, 1902년경부터 오키도 어민에 의한 오징어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04년에는 수출품의 수위에 올랐다.

제2-2기의 큰 특징은 독도에서의 어업이 시작된 것이다. 1899년 오이타현 어민은 울릉도뿐만 아니라 상어의 좋은 어장인 독도 부근에서도 상어잡이를 하였다. 또한 울릉도에서 전복 채취가 불황이던 1899년에는 야마구치현의 잠수기 어업자가 울릉도에서 독도로 가서 전복을 땄다.

그러나 강치의 번식기를 만나 무수한 강치의 방해를 받아 충분한 수확을 올리지 못하였다. 그런 울릉도를 기지로 하는 울릉도 주민들의 어업 활동이나 그들로부터의 징세 활동을 통하여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 구체적으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1900년에 대한제국이 칙령 41호로 울도군을 설치했을 때 독섬으로 불렸으리라 생각되는 ‘石島’가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명시되었다. 일반적으로 전라도에서 石島를 독섬이라 호칭하는 예는 일본 해군 수로부 『조선 수로지』에서도 짐작된다.

칙령 41호 이후의 독도에서의 어업을 보면, 1902년에는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에서 전복을 따고 울릉도로 돌아간 것이 부산의 일본영사관에 의하여 기록됐다. 또한, 1903년에는 오키도민에 의한 강치잡이가 시험적으로 이루어졌고, 다음 해는 5조(組), 6척의 어선이 오키도와 울릉도에서 출어하여 강치를 남획하였다. 그 중 울릉도에서 출어한 어선에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같이 타고 있었다. 1905년 봄에도 울릉도로부터 한국인과 일본인이 공동으로 3조나 강치잡이로 출어하였다.

이상과 같이 울릉도 주민들에 의해 독도가 유효 활용되고 있었는데 독도의 호칭은 일본인과 한국인에서는 달랐다. 일본 해군 군함 닉타카(新高)는 독도를 실제로 본 적이 있는 울릉도 주민들의 말을 인용하여, 일본인이 리양코도라고 호칭하는 ‘리양코루도 암’을 한국인이 “독도라고 쓰고” 있다고 행동일지(1904.9.25)에 기록하였다. 한국인이 “독도라고 쓰고” 있다는 것은 이 섬의 호칭명과 필기명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후대의 기록이지만 독도의 호칭명은 1940년대 후반에는 독섬으로 불렸으며, 때로는 돌섬이라는 호칭도 사용되고 있었다. 독섬이라는 호칭이 사용된 것은 미국의 공문서에서도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948년에 한국 우국노인회가 연합군 SCAP의 맥아더 원수에게 “Docksum”, 즉 독섬을 한국 영토로 인정하도록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이다.

이런 자료 등을 종합하면 독도의 주된 호칭은 독섬이며, 필기명이 1900년 즈음에는 石島, 1904년경부터는 獨島였다. 이 독도를 울릉도 어민들은 대한제국 칙령 41호 이전부터 전복 채취나 상어잡이 등 어업 활동을 통해 자주 활용하고 있었다. 그 후도 일본에 의한 독도의 영토 편입(1905) 이전에 울릉도 어민들은 전복 채취에 더하여 강치잡이를 통하여 독도를 활용했던 것이다. 이들 울릉도 어민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

국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어민들의 활동을 도감 등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1906년에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 시찰단'이 울릉도를 방문했을 때 군수 심홍택이 "본군 소속 독도"라고 쓴 보고서를 정부에게 제출한 것이다. 군수는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 인식은 일본 당국자도 마찬가지였다. 울릉도 주민들의 동향을 늘 주시하고 있었던 부산의 일본 영사관은 1902년에 일본 외무성에 '울릉도 조사 개황'을 제출했는데 그 속에 리양코도 즉 독도를 포함하여 보고하였다.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본 것이다. 그 보고서는 거의 그대로 외무성이 발행한 『통상회찬(通商彙纂)』에 전재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당국자뿐만 아니라 일본의 당국자조차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본 것은 독도가 울릉도 주민들의 어업 활동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인식됐으므로 당연한 일이다. 그 독도를 일본 정부는 1905년 2월에 '무주지 선점'이라 강변하여 일본 영토로 편입한 것이다.

그러나 독도의 영토 편입은 일본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고 정부 차원에서 비밀리에 처리되었다. 그러므로 부산의 일본 영사관조차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 1905년 7월 영사관은 「울릉도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울릉도에서 동남 약 25리(100km)에 위치하는 랑코도" 즉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다루어 외무성에 보고하였다. 일본 영사관은 독도를 일관되게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다루었던 것이다. 또 그 보고를 받은 일본 외무성도 랑코도를 내각 회의에서 결정된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지 않고 보고서의 이름 '랑코도' 그대로 외무성이 발행한 『통상회찬』에 전재하였다. 외무성의 당국자도 역시 랑코도(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 즉 한국 영토로 인식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울릉도 현황」은 그대로 일본 『관보』에도 게재되었다.

일본정부는 리양코도를 무주지라는 구실을 세워 영토 편입하였으나 관보에 공표하지 않았으므로, 외무성이나 관보의 담당자조차 랑코도(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 즉 한국 영토로 보고 관보에 공포하여 그 인식이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로 되었던 것이다.

부록; 메이지(明治)시대의 화폐 가치

(쌀값 환산)

서기 (年)	明 治 (年)	쌀값(엔) 10kg당	당시 1엔의 현재가치(엔)	
			3년평균 (채용)	单年計算 (참고)
1868	1	0.4		8,840
1869	2	0.61	6,548	5,797
1870	3	0.61	6,630	5,797
1871	4	0.38	8,486	9,305
1872	5	0.26	11,166	13,600
1873	6	0.31	10,008	11,406
1874	7	0.49	8,223	7,216
1875	8	0.49	8,098	7,216
1876	9	0.33	8,914	10,715
1877	10	0.37	9,644	9,557
1878	11	0.4	8,160	8,840
1879	12	0.53	6,508	6,672
1880	13	0.7	5,496	5,051
1881	14	0.7	5,331	5,051
1882	15	0.59	6,167	5,993
1883	16	0.43	7,800	8,223
1884	17	0.34	8,767	10,400
1885	18	0.44	9,145	8,036
1886	19	0.38	9,224	9,305
1887	20	0.33	10,200	10,715
1888	21	0.33	10,008	10,715
1889	22	0.4	7,976	8,840
1890	23	0.6	7,216	5,893
1891	24	0.47	6,800	7,523

서기 (年)	明治 (年)	쌀값(엔) 10kg당	당시 1엔의 현재가치(엔)	
1892	25	0.49	7,316	7,216
1893	26	0.49	6,757	7,216
1894	27	0.59	6,352	5,993
1895	28	0.59	5,829	5,993
1896	29	0.64	5,251	5,525
1897	30	0.79	4,402	4,476
1898	31	0.98	4,348	3,608
1899	32	0.67	4,348	5,278
1900	33	0.79	4,653	4,476
1901	34	0.82	4,330	4,312
1902	35	0.84	4,049	4,210
1903	36	0.96	3,958	3,683
1904	37	0.88	3,929	4,018
1905	38	0.86	3,900	4,112
1906	39	0.98	3,620	3,608
1907	40	1.09	3,378	3,244
1908	41	1.07	3,501	3,305
1909	42	0.87	3,762	4,064
1910	43	0.88	3,645	4,018
1911	44	1.16	3,102	3,048
1912	45	1.38	2,672	2,562
1913	大正2	1.43	2,727	2,473
1914	大正3	1.08		3,274

화폐 가치의 계산 방법

- 쌀 값은 해마다의 큰 변동을 피하기 위하여 올해 및 전년, 익년의 3년 평균으로 한다.

• 일본의 현재 쌀 값은 표준가격미 제도(標準價格米制度)의 최종 해인 2004년과 큰 차이는 없으므로 2004년의 쌀 값을 현재 쌀 값으로 간주한다. 2004년의 일본정부에 의한 표준 가격미는 10kg당 3,536엔이다.

- 메이지 시대 쌀 값은 시즈오카(靜岡) 농정사무소의 아래 사이트 통계를 사용한다.

<http://www.maff.go.jp/kanto/shizuoka/kome/pdf/meiji.pdf>

참고문헌

1. 한국어 서적

- 아세아문제연구소, 『舊韓國外交關係文書』, 「日案」, 고려대학교, 1969.
- 아세아문제연구소,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고려대학교, 1973-4.
- 『韓日漁業關係』, 국사편찬위원회, 2002.
- 『韓日漁業關係調查資料』, 史芸研究所, 2000.
- 박구병, 『韓國水產業史』, 태화출판사, 1966.
- 여박동, 『일제의 조선어업지배와 이주어촌 형성』, 한국일본학협회, 2002.
- 이혜은 · 이형근, 『만은(晚隱) 이규원(李奎遠)의 울릉도 검찰일기』,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2006.
- 유미림 · 조은희, 『개화기 울릉도 · 독도 관련사료 연구』,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2008.
- 송병기, 『재정판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2007.
- 김호동, 『독도 · 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2007.
- 영남대학교, 『울릉군지』, 울릉군, 2007.
- 영남대학교, 『울릉도 독도의 종합적 연구』, 영남대학교, 2005.
- 박성용, 『독도 · 울릉도 사람들의 생활공간과 사회조직 연구』, 경인문화사, 2008.
- 영남대학교,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경인문화사, 2009.
- 오상학,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최종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2008.
- 최문형,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 침략』, 지식산업사, 2007.
-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2. 일본어 서적

1) 수산관계

- 葛生修亮, 『韓海通漁指針』, 黑龍會出版部, 1903.
- 農商工部水產局, 『韓國水產誌』第一-四輯.
- 恒屋盛服, 『朝鮮開化史』, 東亞同文會, 1901.

- 岩永重華,『最新韓國實業指針』,寶文館,1904.
- 朝鮮史編修會,『朝鮮史』第6編第4卷,東京大學出版會,1938.
- 奧原碧雲,『竹島及鬱陵島』,報光社,1907.
- 羽原又吉,『日本近代漁業經濟史』下卷,岩波書店,1982.
- 大喜多甫文,『潛水漁業と資源管理』,古今書院,1989.
- 吉田敬市,『朝鮮水產開發史』,朝水會,1954.
- 二野瓶德夫,『明治漁業開拓史』,平凡社選書,1981.
- 『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 業務報告』,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本部,1900.
- 『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報』第4號,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本部,1903.
- 『大日本水產會報告』
- 『日本水產雜誌』
- 統監官房文書課『第一次統監府統計年報』明治39年,高麗書林,1982.
- 統監官房文書課『第二次統監府統計年報』明治40年,高麗書林,1982.
- 關澤明清他『朝鮮通漁事情』,團團社書店,1893.
- 『通商彙纂』第234號,外務省通商局,1902.
- 『通商彙纂』第50號,外務省通商局,1905.
- 下啓助・山脇宗次,『韓國水產業調查報告』農商務省,1905.
- 山口精,『朝鮮產業史』中卷,寶文館,1911.
- 稻井秀左衛門,『朝鮮潛水器漁業沿革史』,朝鮮潛水器漁業水產組合,1937.
- 山口和雄,『日本漁業史』,東京大學出版會,1975(復刻).
- 櫻井義之,『朝鮮研究文獻誌』,龍溪書舍,1979.
- 『長崎縣史』近代編,長崎縣,1976.
- 『山口縣史』史料編 近代4,山口縣,2003.
- 『明治三十九年度 明治四十年度 遠洋漁業試驗報告』,山口縣水產試驗場,1909.
- 楠美一陽,『山口縣豊浦郡水產誌』(復刻版),マツノ書店,1980.
- 大場俊雄,『房總の潛水器漁業史』,嵩書房,1993.
- 『志摩町史』,三重縣志摩町教育委員會,2004.
- 『西鄉町史』下卷,島根縣隱岐郡西鄉町,1976.
- 『新修島根縣史』通史編2 近代,島根縣,1967.
- 中村均,『韓國巨文島にっぽん村』,中公新書,1994.

3. 일반 참고 서적

- 朴炳涉,『安龍福事件に對する檢証』,韓國海洋水產開發院(韓・日語),2007.
- 内藤正中・朴炳涉,『竹島=獨島論爭』,新幹社,2007.
- 内藤正中,『竹島=獨島問題入門』,新幹社,2008.
- 内藤正中・金柄烈『竹島・獨島』岩波書店,2007.
- 内藤正中,『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朝關係史』,多賀出版,2000.
- ローダニエル,『竹島密約』草思社,2008.
- 玄大松,『領土ナショナリズムの誕生』,ミネルバ書房,2006.
- 池内敏,『外交文書と以酌庵輪番制』平成18-19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研究成果報告書,2008.
- 池内敏,『大君外交と武威』,名古屋大學出版會,2006.
- 大西俊輝,『續日本海と竹島』,東洋出版,2007.
- 大西俊輝,『日本海と竹島』,東洋出版,2003.
- 下條正男,『發信竹島』,山陰中央新報社,2006.
- 下條正男,『「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縣民會議,2005.
- 下條正男,『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文春文庫,2004.
- Web竹島問題研究所,『竹島問題に關する調査研究報告書』,島根縣,2008.
- 竹島問題研究會,『「竹島問題に關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島根縣,2007.
- 澤喜司郎,『盧武鉉の竹島戰爭』,山口大學經濟學會,2006.
- 森須和男,『八右衛門とその時代』,浜田市教育委員會,2002.
- 小美濃清明,『坂本龍馬と竹島開拓』,新人物往來社,2009.
- 奥原碧雲,『竹島及鬱陵島』,ハーベスト出版,1907.
- 川上健三,『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復刻版),古今書院,1996.
- 田村清三郎,『島根縣竹島の新研究』,島根縣,1996.
- 『竹島考證 上・中・下』,エムティ出版,1996.
- 『竹島關係文書集成』,エムティ出版,1996.

번역서

宋炳基(朴炳涉譯),『獨島(竹島)と鬱陵島 歷史研究』,新幹社,2009.

- 金學俊(保坂裕二譯),『獨島／竹島 韓國の論理 増補版』,論創社,2007.
- 金柄烈(韓誠譯),『明治三十八年竹島編入小史』,インター出版,2006.
- 慎鏞慶(韓誠譯),『獨島(竹島)』,インター出版,1997.

【abstract】

Fishery off Ulleungdo and Territory Issue on Dokdo

Park Byoung-sup

In October 1900, the Great Han Empire promulgated the “Imperial Ordinance No.41” renaming Ulleungdo “Uldo”, upgrading it to an administrative unit of gun, putting all islands of Ulleungdo, Jukdo and Seokdo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Uldo-gun Governor. A name of Seokdo means a stone island. It is present-day’s Dokdo. However, there is no official evidence showing it. Then, Japanese government doubts why the Imperial Ordinance of 1900 did not use “Dokdo” in the text, why the name “Usan Island”, which the ROK claimed to be the former name of Dokdo, was not used, and when and how the name Dokdo was first used. Even if such doubts will be clarified, they still claim that no evidence that Korea had ever exercised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around the time of the promulgation of the ‘Imperial Ordinance No.41’ and therefore, Korea never had established sovereignty over Dokdo.

A Key to clarify questions is history of fishery off Ulleungdo and Dokdo. There were no officials who actually surveyed Dokdo around the time, though Dokdo was seen by eyes from height of Ulleungdo. Only fishermen actually went to Dokdo. Then, Concrete recognition of the island was formed by activities of fishermen. In this study, process of its recognition is investigated through fishery off Ulleungdo and Dokdo at the last years of the Great Han Empire Era, 1876~1910. Fishery off Ulleungdo changed its feature

as time went by. It is divided as follows.

Period 1: From opening of Korea to the the Sino-Japanese war

 Period 1-1: Trespass of Japanese fishermen (1876~1883)

 Period 1-2: Fishery according to the “Korea-Japan
 Trading Regulations” (1883~1894)

Period 2: From the Sino-Japanese war to the Russo-Japanese
 war

 Period 2-1: Japanese illegal residence (1894~1899)

 Period 2-2: Japanese residence suppor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1899~1904)

Period 3: After the Russo-Japanese war (1904~1910)

Despite the government's policy of leaving Ulleungdo vacant at the period 1-1, every spring Koreans came to Ulleungdo and sent a large amount of seaweed gathered. However, other fishery was negligible. At the same time, Japanese started to trespass on Ulleungdo under support by the Japanese Navy. They illegally logged and gathered abalones. However, they were forcibly pulled out by the Japanese government accepting the protest by the Korean government in 1883. This incident made the Korean government change its policy on Ulleungdo; the vacant island policy was abolished, and instead, an active development policy was implemented.

In 1888, the Korean government concluded the “Korea-Japan Trading Regulations”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The Regulations permitted Japanese fishing off Korean sea including Ulleungdo, but prohibited to build any workshop which is necessary for processing fish. So, Japanese fishery at Ulleungdo was not frequently engaged at the period 1-2.

After the Sino-Japanese War, the Japanese government

promoted deep-sea fishing at the period 2-1. Then, some Japanese fishermen went to Ulleungdo and lived there illegally. They were accepted by the Ulleungdo Chief, levying export tax to him.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ordered Japanese residents in Ulleungdo to pull out in 1899, accepting protest by Korea and Russia. However, some Japanese including fishermen neglected the order and continued to live in Ulleungdo. Soon, the Japanese government changed their policy and supported their residence in Ulleungdo.

In 1899, fishermen started fishing off Dokdo (Liancourt rocks). They caught sharks and gathered abalones there. As a result of such activity, Dokdo is firmly recognized as the subsidiary island of Ulleungdo by Korean and Japanese officials. On the other hand, Korean fishermen called Dokdo as Dok-seom, meaning ‘stone island’ on the basis of their dialect in the Jeollado area. Later, the calling name Dok-seom is confirmed by the official letter to the “Supreme Commander of Allied Power” from the “Patriotic Old Men’s Association” in Korea at 1948. Generally Dok-seom is written as “石島” (Seok-do, stone island) with Chinese character in the Jeollado area, as shown by the second edition of the Chosen Suiroshi (Korean Sealanes) published by the Japanese Navy’s Hydrographic Department. Actually, Dok-seom was written as “石島” (Seok-do) in the “Imperial Ordinance No.41 in 1900.

Fishery off Dok-seom was furthermore activated at the period 2-2. In 1904 and 1905, Korean fishermen at Ulleungdo went to catch sea lions at Dok-seom with Japanese fishermen. At around the time, Dok-seom is written as “獨島” (Dokdo) shown by a diary of Japanese warship Niitaka in 1904. Today it is continuously used.

As a conclusion, Seok-do (石島) in the “Imperial Ordinance No.41” was pronounced as Dok-seom and its Chinese character changed to “獨島” (Dokdo). The island was effectively utilized by

residents in Ulleungdo around the time. While, Usando was missed by residents in Ulleungdo and Korean officials despite of several survey.

Key words : Fishery off Ulleungdo, Imperial Ordinance No.41, Dok-seom, Seokdo, Usando, Matsushima, Takeshima, Liancourt rocks.

이 논문은 2010년 4월 30일에 투고
2010년 5월 15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10년 6월 30일 간행함

편집위원 : 김화경(영남대)
박홍규(영남대)
배진수(동북아역사재단)
오상학(제주대)
정갑용(영산대)

獨島研究

제 8 호

2010년 6월 15일 인쇄

2010년 6월 30일 발행

발행인 : 이 효 수

편집인 : 김 화 경

발행처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TEL : (053) 810-3686

FAX : (053) 810-4704

인쇄처 : 영광기획

053) 851-8987
